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7. 6 선고 2023가단1009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준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의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8. 1. 21.

접수 제31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8. 10. 20. 접수

제473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인 별지2 부동산의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21.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3114호로 근저당권자를 D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21. 6. 22.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8. 1. 21.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으로써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이 2021. 6. 22. 자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양도나 이전등기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판사 한경근

